

## 신·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1 - 5호

“2021년도 신·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”을 시행하기 위하여 「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(산업통상자원부 고시)」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. 3. 5.

신·재생에너지센터 소장

# 2021년도 신·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 - 산업시설 대상 -

## 1 지원사항

### □ 지원대상

-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·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·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(협동조합 포함) 및 중소·중견기업

\* 중소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

\*\* 중견기업 :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

- 산업시설\*에 설치하는 신·재생에너지 생산·이용 설비 시설자금\*\*

\* 산업단지, 공장

\*\* 해당시설(중고설비 제외)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, 설치·개수공사비, 보수비·설계·감리비 (기술도입비 포함) 및 시운전비 등에 한함 (5,000kW초과 수력설비 제외)

「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(신·재생에너지센터 공고)」 제44조

- 대상 설비 : 태양광, 풍력, 연료전지, 태양열, 지열, 바이오, 수소에너지 등 「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(센터 공고)」 [별표 7]의 금융지원사업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해당하는 설비

※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는 제외

## 지원대상(산업시설)

### ① 산업단지

- 산업단지 내 건축물 또는 부지에 단독 또는 공동(조합)으로 설치하는 신·재생에너지 설비
  - \* 산업단지입주 계약확인서, 건물·토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
  - \*\* 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70%이상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이어야 함
- ※ 발전사업자(개인/조합/기업) 등이 소유주로부터 건축물, 부지 등을 임차하여 신청 가능
  - \* 임대차 계약서, 사용승낙서 등 제출

### ② 공장

- 산업단지 외 부지에 설립된 공장 건축물 또는 부지에 설치하는 신·재생에너지 설비
  - \* 공장등록증(연내 준공되는 신축의 경우 공장신설승인서) 확인
- ※ 발전사업자(개인/조합/기업) 등이 소유주로부터 건축물 등을 임차하여 신청 가능
  - \* 임대차 계약서, 사용승낙서 등 제출

- 주1) 산업단지 :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~제8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로서 국가 산업단지, 일반산업단지, 도시첨단산업단지, 농공단지로 구분됨
- 주2) 공장등록증명서 :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
- 주3) 집합건물(소유권이 공간(점포)별로 구분된 건물)은 구분소유권자의 80%(소유면적 기준으로)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함

## □ 지원규모 : 1,500억원

- 지원 규모 등은 자금추천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'21년 5월말까지 소요되는 자금은 '20년 사업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, '20년도 이월예산으로 우선 인출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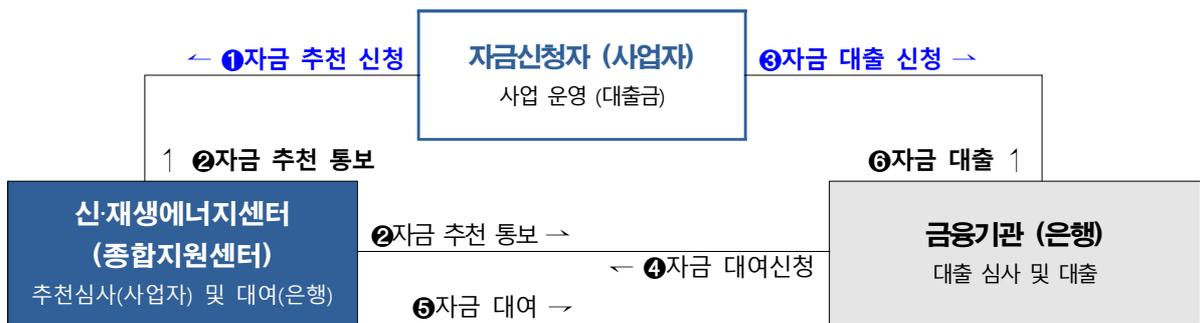
## □ 지원조건

자금 용도		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	대출기간	이자율	총사업비 대비 지원비율
시설 자금	풍력 분야	500억원 이내	5년거치 10년 분할상환	분기별 변동금리 (1.75%)	중소기업(개인 및 협동조합) : 90% 이내  중견기업 : 70% 이내
	태양광 분야	300억원 이내	5년거치 10년 분할상환		
	바이오 분야	100억원 이내	3년거치 5년 분할상환		
	기타 에너지원	100억원 이내	5년거치 10년 분할상환		

- 주1) 이자율 및 용자취급수수료는 “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”에 따름
- 주2) 동일 사업자당 지원한도액, 지원비율 및 지원시기는 자금추천 상황 및 내부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주3) 전년도 10월 이후 착수된 사업에 한해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 대상
- 주4)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설치자금을 중복지원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
- 주5)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,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해 용자 수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## 2 신청방법 및 기간

### □ 추천 및 용자 절차



<금융지원사업 운영 구조>

### □ 신청방법 : 신·재생에너지센터(이하 센터) 홈페이지 접수

\* [www.knrec.or.kr](http://www.knrec.or.kr) > 전자민원 > 금융지원 신청

### □ 신청기간 : '21. 3. 10.(수) ~ 상시

\*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

### 3

## 유의사항

### □ 사전확인 사항

- 최종 대출은 금융기관이 신청자의 신용, 담보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대출 가능 여부를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
- 계통연계가 불가능한 태양광 발전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자금 신청자 및 시공을 위임받은 자는 발전소 예정지의 계통연계 가능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

### □ 자금신청 및 추천

-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금추천 후 본 공고 상 신청자격이 없는 자에게 양도 불가
- 추천액은 당해 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
- 전년도 10월 이후 착수된 사업에 한해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함(계약일자 기준)
  - 산업단지 태양광의 경우 '21년 5월말까지 소요되는 자금은 '20년 사업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, '20년도 이월예산으로 우선 인출 가능
- 자금 신청 시 제출서류는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(신·재생에너지센터 공고) [별표 9] 참고
  - 태양광사업자는 규정에 따라 **보험 또는 공제증서\***를 인출완료 전까지 설치보고서에 첨부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(기기 결함 및 자연재해로 인한 설비파손 복구, 제3자 피해 배상을 위함)
  - \* 태양광 발전설비의 직접손해와 자연재해 또는 운영 중 발생하는 타인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
- 각종 발급 서류 등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

- 신청자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2회까지 신청자에게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
- 태양광 시설자금의 경우 설치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된 경우 심사를 통해 적정 가격으로 조정될 수 있음
- 태양광 장기고정가격 계약\*은 금융지원 사업과 별개의 제도로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자가 별도로 선정됨

\* 신.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.운영지침 제10조

## □ 설비 성능 등

- 설치하고자 하는 설비 중 센터에서 인증하는 신·재생에너지설비가 있을 경우, 인증 받은 설비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
- 탄소 인증 제품을 설치하는 경우 추천 심사 가점 부여
- 신청대상 설비로 신·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, 해당제도의 발급대상 설비의 요건(태양광모듈 효율 17.5%이상 등)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

\*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(신·재생에너지센터 공고)

- 신청대상 설비의 설치장소·설치조건 등에 따라 설비 성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신청자는 성능·용량·설치 및 경제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,
- 정부 및 센터는 설비성능, 채권·채무관계 등 자금사용자와 재화·용역 제공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없음

## □ 자금신청 반려대상

- 서류보완 및 반려사항 발생 시 “신·재생에너지센터-전자민원”에서 확인가능하며, 해당사항은 SMS 발송으로 별도 안내

- 자금지원 대상(사업·시설)자격이 부적격인 경우
  -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[별표7] 자금지원 세부 내역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
  - 사후관리 위반 사업자가 신청한 사업
  - 시공업체와 자금 신청자가 동일한 사업
    - \* 해외진출사업은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나, 단순하도급은 지원 불가
- 신청서 서류보완 요청 시 제출기한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, 보완횟수가 제출항목에 관계없이 2회를 초과한 경우
- 최종 서류보완 완료 후 필수서류 미첨부 또는 내용 오류가 확인 되는 경우 및 신청서와 첨부서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등

### 2021년도 주요 변경사항

- ◇ (기존) 태양광 → (개선) 비태양광 에너지원까지 산업시설 자금으로 신청 가능
- ◇ (기존) 단독입지 공장은 옥상에만 태양광설비 지원 신청 가능 → (개선) 공장 및 부속시설물, 부지까지 포함하여 태양광설비 지원 신청 가능

## 4 기타사항

-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“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(산업통상자원부 고시)”과 “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(신·재생에너지센터 공고)”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
  - 상세내용 문의
    - 신·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(<http://www.knrec.or.kr>) 참조
    - 문의처 : 한국에너지공단 신·재생에너지 콜센터(1855-3020),  
          혹은 각 해당 지역본부 신·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\*
- \* 500kW미만의 태양광사업은 해당 지역본부 신·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에서 심사

## 〈한국에너지공단 신·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 연락처〉

지역 본부	소재지	전화	팩스
서울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KT여의도 타워 11층	02)2071-3816	02)2071-3808
경기	1651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중앙로 140 (하동) 수원컨벤션센터 5층 501~505호	031)300-9943	031)300-9999
인천	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8 (구월동) 인천 YWCA빌딩 3층	032)249-1932	032)249-1901
강원	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57 (온의동) 새마을금고연합회빌딩 2층	033)248-8413	033)256-3914
세종 충북	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0 한국자산관리공사 3층	043)901-6014	043)901-6009
대전 충남	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0 미래에너지움 3층	042)323-4408	042)323-4430
전북	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(팔복동 1가)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2층	063)906-6999, 6921, 6922, 6923, 6924	063)906-6998
광주 전남	광주광역시 북구 침단과기로 123 (오룡동)	062)602-0025	062)602-0099
부산 울산	부산광역시 연제구 명륜로 10 (거제동) 한양골든타워 오피스텔 1105호	051)999-6800, 6816	051)503-7742
대구 경북	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52 (대천동)	053)580-7918	053)580-7979
경남	경상남도 의창구 원이대로 362 (대원동) 창원컨벤션센터(CECO) 1층 103호	055)600-8121	055)600-8199
제주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17 (노형동) 전문건설회관 4층	064)909-0365	064)909-0309